

# 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퇴직연금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**변경 사항**: ①채권운용전문인력 변경 (신홍섭 → 전춘봉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: 2020. 7. 9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운용전문인력	채권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신홍섭</u> 2020.4. 30 기준	<u>전춘봉</u> 2020.6.30 기준
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	채권운용인력 변경	<u>신홍섭</u>	<u>전춘봉</u>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4. 30 기준</u>	<u>2020.6.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채권운용인력 변경	<u>신홍섭</u>	<u>전춘봉</u>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4. 30 기준</u>	<u>2020.6.30 기준</u>
<b>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	채권운용인력 변경	-	<u>2020.1.9 ~ 2020.7.8 :</u>
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			<u>신홍섭</u>
<b>변경 내역</b>			<u>2020.7.9~현재 : 전춘봉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	기업공시서식 변경에 따른	-	<u>누락 기재</u>
조	추가 누락		
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			
<b>류 및 각 종류별 특징</b>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
자대상	경사항 반영	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	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
가. 투자 대상		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	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
[이 투자신탁이 투자		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	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
하는 모두자신탁의 주		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	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
		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	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
		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	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
		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	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



요 투자대상]	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. 3. 31 기준	2020. 6. 30 기준
1.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 무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 경사항 반영 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 항	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</u> 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 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 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 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 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 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 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 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 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 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
	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	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

---

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  
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
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 
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 
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 
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  
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
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 
고시하는 사항 고시하는 사항

〈신 설〉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  
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  
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 
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  
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 
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 
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  
으로 집합투자업나 신탁업자  
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 
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 
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 
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 
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 
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  
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  
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  
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 
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 
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  
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 
함

- 
- 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  - 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
    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---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	<u>전자등록기관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가. 정기보고서
- (2) 자산운용보고서
-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---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	<u>전자등록기관</u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

나. 수시공시

-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

---